

사 업 연 도	· ~ ·	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관리번호		-		

1. 환급제한 대상세액 및 공제한도 계산

① 사업연도	내역				
	② 경정연도	③ 과다납부한 세액	④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	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	⑥ 환급제한과다납부세액(③×(⑤/④))
⑦ 환급제한과다납부세액 합계					
⑧ 각 사업연도별 공제 한도(⑦ X 20퍼센트)					

2. 연도별 공제 내역

⑨ 사업연도	⑩ 연도별 공제대상금액	⑪ 공제할 세액	⑫ 잔액
⑬ 합 계			

작성 방법

1. ① 사업연도란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사업연도를 기재하고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기재합니다.
2. ② 경정연도란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받은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.
3. ⑦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 합계란은 ⑥의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.
4. ⑨ 사업연도란은 공제대상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.
5. ⑩ 연도별 공제대상금액란은 가산세 및 수정신고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.
6. ⑪ 공제할 세액란은 ⑧ 각 사업연도별 공제한도와 ⑩ 연도별 공제대상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.
7. ⑫ 잔액란은 ⑦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합계에서 ⑪ 공제할 세액의 합계 금액을 차감 후 잔액을 적습니다.